대 전 광 역 시　중 구

구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jjunggu.go.kr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1239호

2021. 8. 13.(금)

차　　례

고　시

○ 도로명주소 고시 ····· 2

○ 자율주택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 4

○ 도로명주소 고시 ····· 6

공　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 8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 (중복)결정 (변경)(안) 열람공고 ····· 9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안　내　문

▣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중구공보 발행일 : 매주 금요일(전자공보)　◎ 공보문건 접수마감 : 매주 목요일

※ **금요일이 휴일일 경우는 목요일에 발행**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다음호에 게재**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특별한 문건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문건은 게재할 수 없으니 각 실·과·소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 고시공고에 등재 후 시행문은 전자결재로 기획공보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는 전자공보로 구 홈페이지(민원·행정-행정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발행 : 대전광역시 중구 / 편집 : 공보담당(우34939)대전시 중구 중앙로 100 ☎ 606-6164, Fax 606-7910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 2021-11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06.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4건(부여 3건, 폐지 1건)

- 도로명주소(신규부여):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71번길 132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71번길 132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지적과(☎042-606-6931～693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로부터 도로명주소법 제3조 및 제19조제1항에 의거 주소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1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25-15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71번길 132	2009-07-14	대전 남북을 연결하는 도시로 공간적 위상 고려	건물신축
2	대전광역시 중구 호동 223-5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171번길 44	2009-07-15	대전 남북을 연결하는 도시로 공간적 위상 고려	건물신축
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5-9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 101-1	2009-07-14	도로구간내 교량명칭(선화교)인용	건물신축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사유
1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25-15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71번길 132	2021-08-06	건축물철거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1-115호

자율주택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301-1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인가 등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021년 8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가. 종 류 :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유천동 301-16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유천동 301-16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대표자 ㈜다락]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35 214동 1103호(태평동 버드내2단지)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301-16, 301-49번지

나. 면 적 : 279.40㎡

4. 준공인가일 : 2021. 8 . 11.

5. 준공인가 내역

- 건축용도 및 건축규모

구 분	건축용도	건축규모	비 고
유천동 301-16 301-49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16세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2호)	연면적 1,037.72㎡	-주차: 자주식 10대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세대 수				비고
	계	45.50㎡	42.24㎡	42.78㎡	
임대(주택)	16	8	4	4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호					

6.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7. 기타 관계도서 : 생략

- 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축과(☎042-606-6775)에 준공인가 관련도서 비치. 끝.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 2021-116 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6건(부여 2건, 폐지 4건)

- 도로명주소(신규부여):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33번길 19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테미로 2-46외 3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지적과(☎042-606-6931～693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로부터 도로명주소법 제3조 및 제19조제1항에 의거 주소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326-91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33번길 19	2009-07-14	지역의 공간적 특성 반영	건물신축
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44-10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440번길 46-17	2009-07-14	동서를관통하는도로의기능반영	건물신축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사유
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326-91	대전광역시 중구 테미로 2-46	2021-08-11	건축물철거
2		대전광역시 중구 테미로 2-48	2021-08-11	건축물철거
3		대전광역시 중구 테미로 2-50	2021-08-11	건축물철거
4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44-10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440번길 46-17	2021-08-12	건축물철거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1 - 844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독촉하고자 하오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 같은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3. 공고기간 : 2021. 8. 9. ~ 2021. 8. 24. (15일간)
4.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김*국	69.05.15.	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185번길 30, 101동 706호(오정동, 삼익양지마을아파트)	5인 이상 집합금지	과태료 103,000원	폐문부재

5. 유의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 중구청 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체납할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이 부과되며, 재산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위생과(042-606-7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8. 6.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중구 공고 제2021-861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 (중복)결정 (변경)(안) 열람공고

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630번지 일원 주차공간 확충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내방하는 관광객들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 (중복)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 (중복)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시과(042-606-65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21. 8. 13.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가.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 (중복)결정 (변경) 조서

- 도로·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중구 대흥동 630번지 일원	-	증)10,962	10,962	-	도로계획도로 (대로2-2호/6,045㎡, 대로2-5호/4,917㎡) 지하부분 중복결정

- 도로·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신설 :10,962㎡	•도시계획도로(2-2, 2-5)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대흥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 중복결정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다.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청 중구청 도시과

라.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 작성 제출

마.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끝.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1 - 865호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결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담배와 관련된 기관으로 한정하여 여타의 전문성 있는 단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자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안 제1조 및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경제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경제기업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042-606-7235), FAX(606-7921),
E-mail(paris78@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경제기업과(042-606-72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을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담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실조사를 한 후「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을 “사실조사를 한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을 “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련 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1. 삭제 <2014. 1. 29.>

2. 삭제 <2014. 1. 29.>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9., 2017. 3. 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2018. 12. 7.〉

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⑧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⑨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⑩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⑪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7. 1.]